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6. 6. 23

행정위원회

1. 審查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6월 5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6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6년 6월 22일

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

가. 제정이유

-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4조 및 제6조)
- 평생학습협의회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 영등포구에 재직 중인 국과장급 공무원과 구의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 (안 제5조)
 -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의 임기 (안 제6조제3항)
 - 2년, 연임가능 (단,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함)
- 회의소집 (안 제7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지원(안 제12조)
- 영등포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안 제9조)
-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 (안 제10조)
- 평생학습센터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 (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예산조치 : 2006년 추경예산 편성 시 수당 등 필요경비 편성
- 합의 : 기획예산과 합의
- 입법예고(2006.3.7~ 3.17)결과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전문위원 (김찬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로 '용어의 정의' 신설요구 ○ 제6조제3항과 제9조제3항은 제11조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 요구 ○ '평생학습'과 '평생교육' 용어가 혼용되어 차이점이 있다면 정리해야 할 것임 ○ 평생학습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의 모집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자의 선정기준 등에 대한 조항 신설 요구 ○ 전체 조문을 제1장, 제2장, 제3장으로 나누어 짜임새 있게 정리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신설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삭제 ○ 일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상 차이점은 없으나 요즘 학습자 주도적인 개념으로 '평생학습' 용어를 주로 사용하므로 적절히 혼용함 - 제7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의 5호와 7호 '평생교육'을 '평생학습'으로 변경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의 모집방법 및 위탁 기간에 대해 제6조제4항 신설 - 위탁자의 선정기준 등에 대해 제6조제5항 신설 ○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조문을 제1장 총칙, 제2장 영등포구 평생학습협의회, 제3장 영등포구 평생학습센터로 구성하고 각 기능별 정리 -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를 제3조 (기본원칙)로 변경하고 1항의 '..... 노력하여야 한다'를 '..... 노력한다'로 수정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찬재)

○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본 바,

-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였으며,
- 평생교육이 대두된 배경이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가 요구되고, 인적자원이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의 진흥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으며, 평생학습의 제도적 장치인 조례의 제정 또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규로는

- 평생교육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의 입법형식을 살펴본 바

- 조문의 내용에 따라 장·조항·호로 적정히 구분하였고, 조문의 중복, 상충, 불명료한 조문표현 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바

- 제1조 목적 중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1999.3. 경기도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후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습 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며,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시설을 연계시켜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이며,
- 우리구의 평생교육 시설은 영등포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 767개소가 있으며, 네트워킹의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학습자원 조사, 강사진 시설의 사용교류, 학습정보 공유, 프로그램 단위의 연계, NGO자원의 활용 등을 들 수 있으며,
-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 2월말 현재 평생학습 도시로 33개 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구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2006.5.26. 신청하였으며,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면 국고보조금 외에 자치구 예산의 확보와 타 자치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담부서(팀 또는 과)의 증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제3조의 평생학습협의회 설치안은 평생학습의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기구이므로, 평생학습기관·단체 시설의 임직원과 시·구의원 등으로만 구성하여 전문가의 활용과 민간주도를 도모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다른 조문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음.

4. 審查結果 : 原案可決